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5. 9. .
발 의 자	안주찬 의원 외 7명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주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 연월일 2015. 9.

발 의 자 안주찬, 강승수, 권기만,
김근아, 손홍섭, 정하영,
허복, 안장환 의원(8명)

1. 제안이유

- 가.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 및 조직 육성에 기여하고
-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나. 새마을운동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을 ““새마을운동조직”이란”으로, “직·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를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새마을사업”이라 함은”을 ““새마을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마을연구소”란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학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운대학교 내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란 새마을운동의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해외봉사 활동 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수행하는 영남대학교 내 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 “사업 및 행사 등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미시새마을회 육성 및 운영지원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
4.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
5. 구미시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 및 독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6. 새마을알뜰벼룩장터 운영
7.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운동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8.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탁)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미시새마을회, 새마을연구소, 박정희새마을연구원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거소지를 경상북도에 둔 법인을 말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새마을운동조직</u> ”이라 함은 구미시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 구미시새마을부녀회, <u>직·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u> , 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 새마을교통봉사대구미시지대를 말한다.	1.“ <u>새마을운동조직</u> ”이란----- ----- ----- ----- <u>직장·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u> ,----- ----- -----.
2. “ <u>새마을사업</u> ”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u>새마을사업</u> ”이란----- ----- -----.
<u><신 설></u>	3. “ <u>새마을연구소</u> ”란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학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운대학교 내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u><신 설></u>	4. “ <u>박정희새마을연구원</u> ”이란 새마을운동의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해외봉사활동 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수행하는 영남대학교 내 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지원) -----

-----다음 각 호에-----

-----.

1. 구미시새마을회 육성 및 운영지원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

4.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

5. 구미시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 및 독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6. 새마을알뜰벼룩장터 운영

7.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운동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8.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생략)

제4조(위탁)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미시새마을회, 새마을연구소, 박정희새마을연구원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거소지를 경상북도에 둔 법인을 말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
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